

# 세계 각국 아동수당제도의 성격 및 유형

Child Allowances: Their Types and Characteristics

최영,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본고는 이미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아동수당제도 현황과 아동가족정책으로서 아동수당이 지닌 성격 및 제도 특성에 따른 유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도입될 우리나라 아동수당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1. 우리나라 아동수당제도 도입 논의의 배경

아동수당은 본래 다자녀 빈곤 가정에 대한 소득보장을 위해 시작된 제도이다. 초기 아동수당 제도는 19세기 후반 유럽에서 다자녀 노동자 가구의 부족한 임금을 보충하기 위해 임금 이외의 부가급부로 시작되었으며, 1926년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 이후 벨기에(1930년), 프랑스(1932년), 영국과 캐나다(1934년), 스웨덴(1948년) 등의 국가에서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제도로 완성되었고,<sup>1)</sup> 이후 다른 유럽 국가뿐 아니라 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확산되었다.<sup>2)</sup>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정당,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아동수당 도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타 제도와 중복, 재원 문제 등으로 인해 번번이 실행이 좌절되었다. 하지만 지난 대선 국면을 거치면서 아동수당이 대선 쟁점으로 부상하였고

---

1) 최성은 등(2010). 아동수당 도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이미경. (2010). 가족지원정책유형에 따른 아동수당제도 비교. 대구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공히 아동수당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아동수당 도입이 가시화되었다. 당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아동수당제도 도입을 제시하였고, 정부와 여당의 논의를 거쳐 2018부터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이전과 달리 아동수당제도가 정책적으로 도입될 수 있었던 데는 다음과 같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가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기준 1.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거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여 년 동안 약 85조 원의 재원을 투입하였으나 저출산 경향을 반등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sup>3)</sup> 이에 따라 저출산 문제<sup>4)</sup>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아동수당과 관련된 논의가 새롭게 조명된 측면이 있다.

이와 더불어 정치적·경제적으로 기본소득과 관련된 논의의 확산이 있다.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 완전고용이라는 전제하에 설계되었던 복지국가가 최근의 청년 실업 문제나 비정규직 문제 등 새로운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고, 기존 복지체제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미래에는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하나로 모든 시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 소득을 지급하자는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학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학자들은 보편적 아동수당을 기본소득의 한 형태로 간주하여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최근 대선 국면에서도 이러한 주장이 정책의제화되어 많은 관심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소득 주도 성장 전략으로 아동수당에 관한 논의를 확산하는 것이다. 소득 주도 성장 전략은 고용 정체, 자영업 침체, 소득불평등의 심화로 내수 부족과 같은 저성장 구조의 덩어리에 빠져 있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재고함

3) 신성식. (2016. 9. 30.). 프랑스·일본 출산 늘린 아동수당, 도입여부 고민해 볼 때. 중앙일보.

4) 백선희. (2016).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서의 아동수당 도입의 쟁점과 방향. 더좋은미래연구소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 대선 핵심 아젠다 연구속도론회 자료집.

으로써 안정적인 소비 및 투자 수요를 창출하여 경제 성장과 경제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sup>5)</sup>으로, 현 정부의 주요 경제 기조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은 이와 같은 소득 주도형 경제 성장 전략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배경은 아동수당 도입의 목적과도 연결될 수 있는데, 즉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 문제 대응, 기본적인 소득 제공을 통한 아동의 생존권·발달권 보장, 재분배를 통한 경제 성장 등이 아동수당제도의 정책 목표로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 목적을 적절히 달성하기 위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며 대상자의 범위, 급여의 수준, 급여의 형태, 재원 조달 방식 등과 더불어 아동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보육서비스, 출산전후 유급휴가, 양육수당, 조세 지원 등 아동가족지원정책과의 연계 조정 방식과 관련된 쟁점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은 이러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본고에서는 OECD 회원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아동수당제도의 성격을 규정하여 제도를 설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유형화하여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아동수당제도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아동가족정책으로서의 아동수당의 성격과 필요성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대한 소득 지원을 통해 아동의 복지와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아동 양육으로 발생하는 지출의 일부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나 이러한 소득보장 효과 이외에도 아동 빈곤 감소, 소득 재분배, 여성의 지위 향상, 사회통합, 출산 장려에 이르기까지 제도의 설계에 따라 다양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동수당제도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아동가족정책으로 언급되는 보육서비스, 출산전후 및 육아휴직, 조세 지원, 기타 수당 등과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아동급여 패키지(child benefit package)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제도별 특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동수당제도의 성격은 아동가족정책을 어떻게 유형화하는지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규정

5) 김승연. (2017). 저출산 저성장 극복대책으로서 아동수당. 월간공공정책.

될 수 있다.

OECD 회원국의 아동가족 관련 정부 지출 자료를 제공하는 OECD의 가족자료(Family Database)에서는 아동가족정책 관련 지출을 크게 현금, 서비스, 세제 혜택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현금의 아동 양육하는 가족에게 제공되는 아동 관련 현금급여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아동수당을 비롯하여 부모휴가 급여, 그리고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구를 위한 소득 지원 등이 포함된다. 서비스는 주로 현금급여로 제공되며 아동 보육과 조기 아동 교육을 위한 직접적 재정 지원과 보조금, 공공 아동 보육 지원, 아동·청소년과 시설 거주자를 위한 지원, 가정도우미 서비스 등과 같은 가족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세제 혜택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은 단순히 급여 형태에 따른 것으로 제도별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와는 달리 아동가족정책의 경우 기존 남성 생계 부양 모델에 기초한 기존의 가족 단위 정책에서 1970년대 이후 젠더 관점이 반영되면서 젠더평등과 더불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고, 이 과정에서 제도별 특성에 따른 구분이 보다 명확해졌다. 아동가족정책 차원에서는 각 제도별 특성을 더 잘 반영하여, 일반적으로 현금 지원(in cash)과 시간 지원(in time), 그리고 서비스 지원(in service)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sup>6)</sup> 현금 지원은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현금급여로 아동 및 가족수당, 보육지원금, 출산장려금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시간 지원은 여성이나 남성이 아동 양육의 역할과 노동시장 참여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출산전후휴가나 유급 육아휴직 등 아동 돌봄을 위한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지원은 보육서비스 등과 같이 가족 내 아동 보육 및 아동 양육을 국가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이다. 시간 지원과 서비스 지원은 여성의 ‘일·가족 양립’을 가능케 하고, 따라서 노동권과 가족권을 보장하는 정책 도구로 간주된다.<sup>7)</sup>

한편, 아동가족정책은 가족의 아동 돌봄 노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아동 양육으로 인해

6) 김사현, 홍경준(2014). 출산 및 여성노동참여율에 대한 가족정책의 영향. 사회복지정책, 41(2).

7) 송다영, 정선영(2013). 통합적 가족정책으로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과제. 비판사회정책, 39.

지출되는 양육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sup>8)</sup>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sup>9)</sup> 먼저 가족의 돌봄 노동을 지원하는 정책은 주로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데, 대표적인 예로 보육서비스, 양육수당,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아동수당이나 세제 지원은 양육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아동 양육에 필요한 소비지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현금급여로 지급되는 점에서 소득지원제도의 성격을 갖는다. 이에 따르면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은 같은 현금급여로 제공되지만 성격은 완전히 다른 제도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분류에 따르면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로서 아동 양육에 소요되는 소비지출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지원제도의 하나로 성격이 정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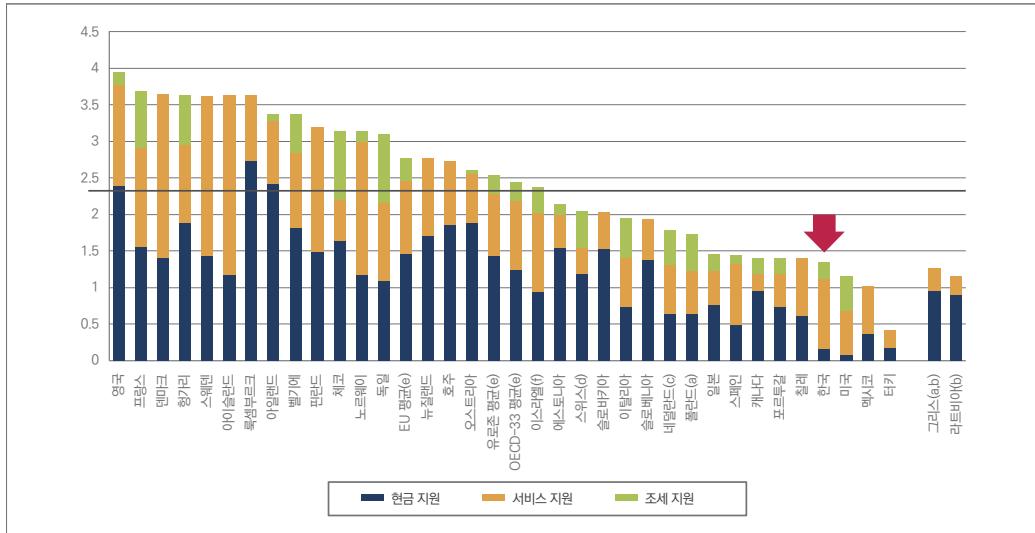
한편,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는 이러한 돌봄 노동 지원 정책과 아동 양육 비용 지원을 위한 현금 정책을 조합해 아동가족정책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제도 간의 상호 보완을 통해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OECD 회원국의 경우 2015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평균 2.4%(현금 1.2%, 서비스 0.9%, 조세 0.3%)를, 영국이나 프랑스 등 선진국은 4% 내외를 아동가족 관련 지출로 사용하고 있고, 여기에는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 지원’과 보육·교육 같은 ‘서비스 지원’ 그리고 ‘조세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저출산 극복 국가로 언급되는 프랑스는 GDP의 약 3.7%를 아동가족지출로 사용하고 있고 이 중 현금은 1.6%, 서비스는 1.3%, 조세로는 0.8%를 사용한다.

반면,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가족 관련 급여로 GDP의 약 1.4%를 지출하고 있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속하며, 그마저도 대부분이 보육서비스 지원에 집중되고 현금급여는 상당히 미약한 실정이다.

8) 복지국가의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인구 대상별 프로그램은 대부분 가족 구성원의 돌봄 노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와 대상자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지원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노인의 경우, 치매나 뇌졸중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의 돌봄 노동을 사회화한 형태로 장기요양보호서비스가 제공되고, 노인가구의 소비지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이나 국민연금 등과 같은 현금의 소득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9) 최영(2017). 돌봄정책으로서의 현금수당: 한국형 아동수당제도 도입의 방향. 2017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그림 1. OECD 회원국의 가족 관련 공공지출 비중, GDP 대비 %, 2013년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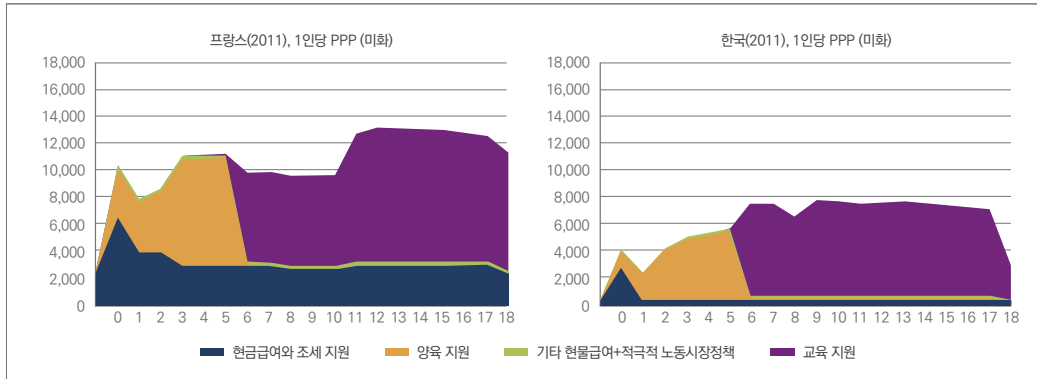


자료: OECD Family Database(2016).

한편,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아동기 아동가족 관련 공적지출로 저출산을 극복한 국가로 언급되는 프랑스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전 연령대에 걸쳐 공적지출 수준이 절대적으로 낮으며, 이 중 일부는 프랑스와 같이 아동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현금급여의 부재로 인한 것이다. 특히 아동기 중 0~5세 영유아기의 공적지출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 시기에 지급되는 공적지출은 주로 (보육)서비스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현금 지원도 출산기에 집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가구 내 아동 돌봄 노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와 소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지원 정책이 적절히 구조화된 프랑스의 아동가족지원정책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돌봄 노동 지원을 위한 정책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가족정책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돌봄 노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는 보육서비스, 산전후휴가·육아휴직, 양육수당 등이 있으나 아동 양육에 소요되는 소비지출 비용 지원은 대부분 자녀장려금, 자녀세액공제 등의 조세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며 외국과 같은 현금 지원 형태의 아동수당제도는 도입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 돌봄 노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지출은 2016년 기준으로 보육서비스, 산전후휴가·육아휴직, 양육수

그림 2. 연령별 아동가족 관련 공적지출 구조 비교: 프랑스와 한국



자료: OECD Family Database(2016)를 활용하여 저자가 재구성함.

당 등에 지출된 약 11조 2000억 원 내외다. 반면, 아동 양육에 필요한 소비지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동장려금, 자녀세액공제 등의 조세 지원을 통해 약 2조 원 내외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조세 지원의 경우 소득역진성(특히 자녀세액공제)이 강하고, 그 액수가 크지 않아(예를 들면, 자녀장려금은 아동 1인당 최대 연 50만 원, 자녀세액공제는 연 15만 원에서 30만 원임), 가구 내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소비지출 비용을 보충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 3. 세계 각국의 아동수당제도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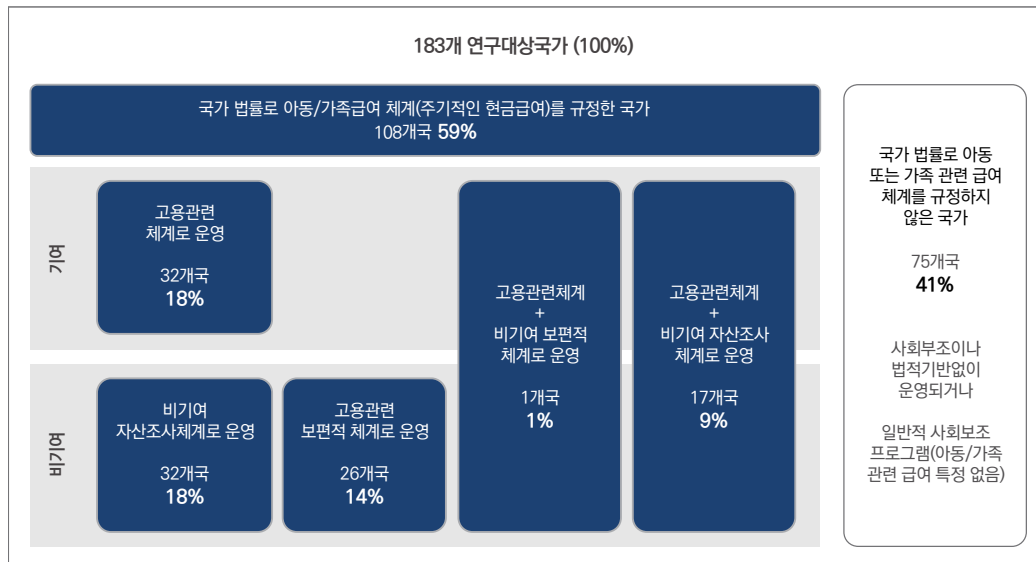
OECD 30개국 중 미국, 한국, 멕시코를 제외한 27개국이 아동수당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나 급여 대상, 급여 수준, 재원 조달 방식 등이 국가별 정책 목표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유형화하여 분류하기가 쉽지 않다.

국제노동기구(ILO)<sup>10)</sup>는 ILO 회원국 183개국 가운데 법적 기반에 따라 정기적으로 아동가족 관련 급여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108개국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제노동기구는 기여 여부와 고용 연계 여부 그리고 자산 조사 여부 등에 따라 아동가족 관련 현금급여를 5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기여에 기반한 고용 연계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는 32개국으로 약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기여 자산 조사 체계

10) ILO(2015). Social protection for children: Key policy trends and statistics.

로 운영되는 국가 또한 32개국으로 약 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기여 보편적인 아동가족급여 체계로 운영하는 국가는 모두 26개국으로 약 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이 외 고용 관련 체계와 자산 조사 또는 보편적인 체계로 운영되는 국가가 18개국으로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3. 아동·가족수당의 유형



자료: ILO(2015). Social protection for children: Key policy trends and statistics.

한편, 몇몇 국내 연구<sup>11)</sup>에서는 미국 사회보장청에서 발간하는 세계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소개된 내용<sup>12)</sup>을 바탕으로 아동가족급여를 크게 보편주의형, 사회부조형, 고용 연계형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보편주의 유형은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재원은 국고를 통해 지출되며 그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이면 제도의 대상이 된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등 영국과 독일을 제외

11) 예를 들면 이선주 등(2006). 아동수당제도의 국제비교 및 도입방안. 한국여성개발원.

12)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2016).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https://www.ssa.gov/policy/docs/progdesc/ssptw/>에서 9. 22. 인출.



하고는 주로 북유럽 국가들이 이에 속한다.

사회부조 유형은 소득이나 자산 조사를 통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한정해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 유형은 다른 제도의 보충적 형태로 제공되는 경향이 강하며 국고를 통해 빈곤 가구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표적인 국가로 뉴질랜드, 스페인, 아일랜드, 호주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고용 연계 유형은 아동이 있는 임금생활자 또는 자영업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급여 지급을 근로자의 고용 상태(노동시장 참가 경험이 있거나 참가하고 있는 경우)에 연동함으로써 아동수당제도를 통해 근로 유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재원은 국고, 사업주 분담금과 정부 보조금을 통해 마련되며 이탈리아, 스위스, 그리스 등이 이 유형에 속한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아동수당의 전형적인 유형은 보편주의 유형이다. 하지만 보편주의 유형이라고 해서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프랑스는 보편적인 형태의 아동수당을 소득에 연계해 제공하면서 부가적으로 대상 아동의 욕구에 따라 자산 조사를 실시하는 영아수당 및 각종 수당을 제공하며, 오스트리아는 보편적인 아동수당과 더불어 자산 조사를 실시하는 아동양육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있다.<sup>13)</sup>

하지만 이 외에도 대상 아동 범위, 급여 수준, 재원 조달 방식, 지급 대상 등 여러 측면에서 국가별 재정 수준이나 정책 방향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수당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면, 대상 아동의 연령 기준은 국가별로 상이하나 의무교육 기간 또는 최소 노동 연령에 해당하는 만 16~18세까지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부 국가는 학업을 지속하고 있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수급 연령을 연장해서 지급하기도 한다. 급여 수준 측면에서는 자녀 수와 연령을 고려해 지급 금액을 차등화하기도 한다. 즉,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녀 수가 증가할수록 출생 순위에 따라 급여액이 늘어나기도 하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액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재원 조달의 경우 보편적 수당 방식을 택한 국가의 대부분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 일반세입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많고, 급여액은 물가 또는 평균소득을 반영해 매년 조정한다. 이 외에 정부뿐만 아니라 고용주나

13) 최성은 등(2010). 아동수당 도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근로자 등이 재원을 부담하는 경우도 많아 국가별로 재원 부담 측면에서 정부, 고용주, 근로자 3자의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오스트리아는 정부, 주정부, 고용주(임금의 4.5%)가 공동 부담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정부, 고용주, 자영업자 등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다. 일본이나 이탈리아는 고용주가 주로 부담하고 정부가 이에 보조금을 부담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아동수당제도를 통해 일정 부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특성이다. 이 경우 기본적으로 아동별로 균등한 급여가 제공되더라도 가구 내 아동 수가 증가함에 따라 총급여액이 증가하도록 해 일정 정도 출산 장려 효과가 나타나도록 설계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더하여 보다 강력한 출산장려책으로 기능하도록 일부 국가들에서는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차등적인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는 1932년 임금정책의 일환으로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저출산 위기를 심각하게 겪으면서 둘째 이후의 자녀가 출생할 때마다 급여액이 증가하는 출산 장려 기제를 도입하여 출산을 제고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sup>14)</sup> 아시아 국가 중 아동수당을 도입한 일본의 경우도 2012년 이후 첫째, 둘째 자녀는 월 1만 엔, 이후 출산 자녀부터는 월 1만 5,000엔을 지급하는 등<sup>15)</sup> 자녀 수에 따라 차등적인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아동수당제도가 강력한 출산 장려 기능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스웨덴도 모든 아동에게 동일한 급여가 제공되는 보편적 아동수당제도에 더하여 출산 장려 목적으로 다자녀가 정 아동에게 추가적인 수당(Large family supplement)을 제공하고 있다.<sup>16)</sup> 그 외 핀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등도 유사한 형태의 출산 장려 기제를 아동수당제도에 도입하고 있다.

#### 4. 우리나라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대한 시사점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 각국의 아동수당제도는 각국의 사회경제적 환경과 정책 목표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실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바

14) 이선주 등(2007). 주요 국가의 아동수당제도에 관한 연구: 프랑스, 핀란드, 일본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3(4): 167-192.

15) 김성아·김태완. (2017). 일본의 아동수당과 한국의 가정양육수당 비교. 보건복지포럼, 248호.

16) 스웨덴의 아동수당은 아동 1명당 1050SEK가 지급되며,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대가족보조(Large family supplement)가 추가로 지급된다. 자녀가 2명일 경우 150SEK, 3명일 경우 604SEK, 4명일 경우 1614SEK 등 자녀 수 증가에 따라 보조 금액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강력한 출산 장려 기제로 기능하고 있다.

와 같이 아동의 생존권·발달권 보장이라는 기본권의 충족,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 등과 같은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가급적 이에 적합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에서 도입할 예정인 0~5세를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제도는 일단 여러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이후 앞에서 언급한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장기적인 개선 방향을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제도를 완성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모든 아동의 보편적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를 국민의 합의와 동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18세 이하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편적인 기본 아동수당 이외에 출생 순서에 따라 급여를 차등하여 지급하는 추가적인 수당을 도입하여 아동수당제도가 강력한 출산 장려 기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수당제도는 의도하는 정책 목표에 따라 각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육서비스, 유급휴가, 조세지원제도 등 기존 아동가족정책과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아동급여패키지 형태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성이 있다.